

審判研究官制度의 導入

李 哲 煥*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우리나라 憲法裁判所 憲法研究官制度 |
| 2. 우리나라 大法院 裁判研究官制度 | 6. 기타 研究官制度 |
| 3. 일본의 最高裁判所 調査官制度 | 7.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위한 제언 |
| 4. 미국의 Law Clerk 制度 |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海洋安全審判制度는 1961년 12월 6일 법률 제813호로 制定·公布된 海難審判法에 의하여 1963년 서울의 中央海難審判委員會 및 釜山, 仁川, 木浦의 地方海難審判委員會가 설치된 이래 수차례 걸친 법개정과 더불어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800건 정도의 海洋事故가 발생하여 200여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직도 海洋事故多發國家라는 不名譽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海上交通量の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海洋事故가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公明正大한 審判을 수행할 막중한 責務를 부여받은 審判官을 보좌하는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위하여 研究官의 선발, 구성, 업무의 배당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바 우선 우리나라의 大法院의 재판研究官, 憲法裁判所의 憲法研究官, 일본의 最高裁判所의 調査官, 미국의 聯邦最高裁判所의 Law Clerk, 일본의 高等海難審判廳의 調査官制度 등 현행 각종 研究官制度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海洋安全審判制度에 적합한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大法院의 裁判研究官制度

2.1 裁判研究官制度의 도입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우리나라의 大法院에 裁判研究官制度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12월 13일의 개정된 法院組織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 11월에 처음으로 12명의 裁判研究官이 지명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71년에는 大法院判事の 増員에 따라 研究官의 수가 17명으로 되었다가, 1975년에는 15명의 大法院 判事에게 2인씩의 研究官을, 그리고 大法院長에게 1인의 研究官을 두어 31명의 研究官을 지명하였다.

1981년에 大法院 判事の 수가 12인으로 되자 24인의 研究官을 두었다가, 1983년에는 大法院長에 2인의 研究官을 추가하여 함께 26인의 研究官으로 되었고, 1990년 2월 12인의 大法官에게 專屬되는 2인씩의 研究官 24인 및 特別事件(行政事件)만을 취급하는 12인의 共同研究官을 두어 함께 36인으로 늘어났다.

이후 共同研究官의 増員 및 首席裁判研究官, 先任裁判研究官 등의 신설에 따라 2001년 6월 14일 현재 大法官 12명에 대한 專屬裁判研究官 각 2명씩 24명과 共同裁判研究官 26명 및 先任裁判研究官, 首席裁判研究官을 포함하여 52명의 裁判研究官을 두고 있다.

2.2 재판研究官의 選任과 職務

大法院의 裁判研究官은 大法院長이 지명하는데, 원칙적으로 地法部長 승진 직전의 단계에 있는 서열이 높은 高法判事 중에서 지명되고 있다.

1965년 裁判研究官이 처음 지명된 이래 1990년 2월 이전에는 1인 또는 2인의 裁判研究官이 각각 大法官에게 전속적으로 배속되어 특정의 大法官을 補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司法行政制度改善委員會에서 大法院의 업무부담의 가중과 관련하여 研究官制度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결과 1990년 2월부터 36인의 研究官 중 24인은 2인씩 12인의 大法官에게 專屬되어 해당 大法官을 補佐하고(專屬研究官), 나머지 12인은 당시 大法院의 판례통일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던 特別事件(行政訴訟事件)만을 연구하기 위한 研究官으로 투입되어 특정의 大法官에게 專屬되지 아니하는 研究官制度(共同研究官)를 신설하는 등 制度상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共同研究官은 다시 行政事件을 주로 다루는 “特別組”와 民·刑事事件을 주로 다루는 “一般組”로 나누어 운영해오다가 1992. 8월부터는 一般組(一般民刑事事件), 勤勞組(勤勞關係에 비롯하는 民事·行政事件 등), 知的所有權組(특히 特許事件이 대부분으로 著作權事件도 포함됨), 租稅組(租稅事件), 一般行政組(一般的인 行政訴訟事件)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研究官制度의 운영은 위 特別組와 一般組에 따라 다르다. 즉 特別組의 경우(대상사건이 行政訴訟 등 特別組의 대상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大法院에 접수되어 主審大法官이 정해지면 먼저 首席裁判研究官에게 기록이 도달되어, 首席裁判研究官이 그 기록을 해당 組의 가장 상서열의 研究官인 組長에게 주면 해당 組長은 組員들과 협의하여 그 사건을 검토할 主審研究官을 지정하고, 그가 研究報告書를 작성하여 首席研究官을 통하여 主審 大法官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一般組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어 主審大法官이 정해지면 해당 大法官室에서 먼저 記錄을 檢討하고 그 결과 그 자체에서 결론을 내릴 정도이면 그 단계에서 처리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首席裁判研究官에게 보내며, 그곳에 보내진 事件은 앞서 본 特別組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3. 일본 最高裁判所の 調査官制度

3.1 調査官制度의 沿革

일본에서는 2차대전 후 법원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미국의 Law Clerk 制度를 본받아 最高裁判所와 高等裁判所에 調査官을 둘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초에는 法官이 아닌 자로서 특수 분야의 専門家を 調査官으로 영입할 의도이었으나 1949. 6. 1. 裁判所法을 개정하여 法官을 調査官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래, 最高裁判所の 調査官은 法官으로 충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最高裁判所の 15인의 裁判官 중 5인 이내는 職業的인 法律家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되므로, 특히 法官인 調査官에 의한 裁判業務의 보조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3.2 調査官의 選任과 職務

最高裁判所の 調査官의 수는 최초에는 6명이었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 7월 현재 34명에 이르고 있다. 調査官은 裁判官이 개인의 비서진이 아니라 裁判官과 마찬가지로 上告事件을 담당받아 같은 사건의 主任裁判官(裁判長)을 補佐하며, 調査官 전체가 15인의 最高裁判所 裁判官을 補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最高裁判所の 調査官 34인은 1인의 首席調査官을 정점으로 하여 民事調査官室, 刑事調査官室 및 行政調査官室의 3개의 室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調査官室에는 각 1인의 上席調査官이 있고, 각 室에 배치되는 調査官의 수는 업무량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현재는 民事調査官室 18인, 刑事調査官室 9인, 行政調査官실 6인이 배치되어 있다.

調査官의 選任對象은 首席調査官의 경우는 地方裁判所の 所長 또는 高等裁判所の 裁判長을 거친 자, 그 외 調査官의 경우는 裁判官 임관 후 9년이 넘은 자이나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 연령 45세 정도로서, 각 調査官室의 上席調査官은 地方裁判所の 裁判長을 거친 자 또는 地方裁判所 所長으로 진출되기 직전의 자이고, 기타의 調査官은 임관 후 10년이 넘은 자로서 地方裁判所 裁判長으로 진출되기 직전의 자이다. 그리고 일단 調査官으로 選拔되면 통상 5년 정도의 기간동안 調査官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最高裁判所 調査官室의 운영방식은 民事·行政事件의 경우와 刑事事件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즉 民事·行政事件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이 主審 裁判官에게 회부되기 이전에 먼저 調査官室에 사건이 회부되고, 主審 調査官이 정해지면 主審 調査官이 主審 裁判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整理·分析·調査하여 調査報告書

를 작성하여 主審 裁判官에게 보고한다.

이에 반하여 刑事事件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主審 裁判官이 속하는 小法廷에 대응하는 調查官室에 사건이 먼저 회부되고, 主審 調查官이 정해지면 主審 調查官이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정리·조사하여 調查報告書를 작성한 후 主審 裁判官에게 보고한다.

主審 調查官으로 정해지면 우선, 기록과 上告理由書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爭點과 職權調查事項 등에 관한 문제점의 파악, 學說·判例·外國事例 기타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調查官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論點을 추출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調查報告書를 작성, 主審 裁判官의 審理·判斷의 자료로 제출한다.

上告事件 중 변론을 열 사건이 있으면 書記官室과 상의하여 일정을 잡고, 화해를 시도할 사건은 직접 당사자와 면접하기도 하고, 囑託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는 囑託判事와 만나기도 하고, 刑事사건에서 保釋청구를 한 辯護士와 면담하는 등 裁判活動을 보조하기도 한다.

일본 最高裁判所의 調查官에 대한 특이사항은 調查官이 裁判官의 合意時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거나 意見開陳까지도 허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評決時에는 퇴장한다.

調查官은 이상과 같이 裁判官을 보조하는 활동 이외에도 研究活動으로서 民事調查官研究會 등을 열어 각 調查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로 意見交換과 討論을 하며, 判例集에 등재할 판례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그가 調查報告한 事件이 宣告되면, 이에 관한 判例解説을 작성하기도 한다.

4. 미국의 Law Clerk制度

4.1 Law Clerk制度의沿革

미국의 法院에서 判事를 보좌하는 Law Clerk을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875년의 Massachusetts주 大法院 判事인 Horace Gray에 의하여 개인의 비용으로 Harvard Law School(이하 HLS로 표기)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채용한 것이다. 그 후 1882년 위 Horace Gray가 미국 聯邦最高裁判所의 裁判官으로 임명된 후에도, 역시 자기의 비용으로 HLS 최고우등생을 그의 Law Clerk으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1886년에는 聯邦議會가 Law Clerk制度의 유용성을 인정하여 각 裁判官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1명씩의 專屬 Clerkship를 제공해준 이후, 모든 裁判官이 이 방식을 도입하여 Law Clerk을 채용함에 이르렀다.

4.2 Law Clerk의 선임과 임무

미국의 聯邦最高裁判所를 포함한 거의 모든 法院에서의 Law Clerk의 채용은 裁判官의 개인적인 피고용자이므로, 각자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Law Clerk을 채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에 우수한 Law School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선발되는데, 학교장의 추천, 직접 면접, 서류심사, 동료 裁判官 또는 下級法院 判事の 추천 등으

로 채용한다. Law Clerk의 수는 1886년 聯邦議會가 미국 聯邦最高裁判所に 1인씩의 Clerkship을 제공한 이래 1888년에는 9인의 裁判官 모두가 1인씩의 Law Clerk을 채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사건의 증가와 함께 그 수가 증가되어 1947년에는 2인씩, 1967년에는 3인씩으로 각 증가되었다가 현재에는 4인씩의 Law Clerk을 두게 되었다.

미국의 Law Clerk은 裁判官의 개인적인 피고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각 裁判官의 취향에 따라 그를 돕는 구조를 가지므로 Law Clerk들이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裁判所長의 경우에는 首席 Law Clerk인 Senior Law Clerk을 1명 더 가지고 있다.

또한 Law Clerk은 통상 1년 또는 2년의 단기간 동안만 근무하므로 업무에 계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Central Legal Staff 또는 Staff Attorney 등으로 불리는 制度를 도입하여, 熟達된 法律家로 하여금 상당기간에 걸쳐서 法院의 判事들을 共通的으로 돕게 하고 있으며, 聯邦最高裁判所の 경우에는 裁判所 전체 또는 裁判所長의 일을 돕기 위하여 House Lawyer 또는 Staff Lawyer라고 불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인을 4년 임기로 채용하고 있다.

Law Clerk의 임무는 자기가 소속된 裁判官의 업무 방식, 성향, 기질 등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고, 수집하여 그 調査·研究의 결과를 報告書(Legal Memorandum)로 정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意見書(Draft Opinion)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判決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裁判官의 지시 또는 논리에 따라 判決의 草案을 작성하는 것도 역시 Law Clerk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와 같이 Law Clerk은 특정의 裁判官 개인에게 專屬되어 그의 趣向에 따라 보좌하는 등 裁判官의 專屬副官으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다.

5.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研究官制度

5.1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와 研究官制度의 도입

우리나라 憲法裁判은 制憲憲法에서부터 채택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많은 迂餘曲折을 겪었다.

1948년의 制憲憲法에서는 憲法委員會를 두어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인과 國會議員 5인의 委員으로 구성하였으나, 1950년 業務始作以來 10년간 단지 6건의 違憲法律審判事件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960년 憲法에서는 憲法委員會를 없애는 대신 違憲法律審判, 權限爭議審判, 政黨解散審判, 彈劾裁判, 選舉訴訟審判 등을 담당하는 현재의 憲法裁判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한 憲法裁判所制度를 도입하였으며, 第1共和國의 憲法委員會와 달리 9명의 裁判官으로 이루어진 常設機關이었으나 憲法裁判所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2년 憲法에서는 憲法裁判機關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大法院으로 하여금 違憲法律審判과 政黨解散審判, 選舉訴訟審判을 하도록 했다가 1972년에 維新憲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憲法委員會를 두어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을 맡게 하였으나 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判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憲法에서도 憲法委員會를 두어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을 맡게 하였다. 大法院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會議에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만 憲法委員會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할 수 있게 함으로써 違憲法律審判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結果적으로 第4共和國과 마찬가지로 憲法委員會는 休眠機關이었으며, 이때까지는 憲法研究官制度가 도입되지 아니하였다.

1987년 現行憲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현재의 憲法裁判所制度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9월 1일 發效된 憲法裁判所法에 의하여 憲法研究官制度(憲法研究官 및 研究官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 제정 당시에는 別定職 公務員인 憲法研究官(研究官補 包含. 이하 같다)을 두었으나 1991년 법 개정시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一般職 公務員인 憲法研究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정원은 研究官 9인, 研究官補 9인이다.

5.2 憲法研究官의 選任과 任務

憲法研究官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 이상의 職에 있던 者, 國會·政府 또는 法院等 國家機關에서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5년이상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憲法裁判所에서 憲法研究官補로 5년이상 근무한 者 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免하도록 되어 있고(憲法裁判所법 제19조제4항), 憲法研究官補는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 專任講師이상의 職에 있던 者, 法律學에 관한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公法學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者, 國會·政府 또는 法院等 國家機關에서 5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4년이상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免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9조제5항) 또한, 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憲法研究官 또는 憲法研究官補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제6항)

憲法研究官 또는 憲法研究官補는 憲法裁判所長의 명을 받아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研究에 從事하며, 別定職인 憲法研究官 또는 憲法研究官補 중 1인을 憲法裁判所裁判官別로 배치하여 專屬的으로 補助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7인의 憲法研究官과 9인의 憲法研究官補가 재직하고 있다.

憲法裁判所長이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派遣勤務를 요청하여 현재 8인의 判事が 法院에서, 5인의 檢事が 檢察廳에서, 1인이 法制處에서 파견나와 憲法研究官으로 근무하고 있고, 3인이 財政經濟部, 國防部, 國稅廳에서 파견나와 憲法研究官補로 근무하고 있다.

그 밖에 公法分野의 博士學位 소지자 중 4인의 研究員으로 채용되어 역시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研究에 從事하고 있다.

6. 기타 研究官제도

6.1 檢察研究官

檢察廳法 第15條에 따라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補佐하고 檢察事務에 관한 企劃·調査 및 研究에 從事하는 檢察研究官을 둘 수 있으며, 檢察研究官은 檢事로 보하고,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を 兼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檢察研究官은 檢察制度의 發展을 위해 全般的인 領域에 걸친 研究業務를 遂行하는 檢察內에서 일종의 썩크탱크 역할을 하며, 一線 支廳檢事들의 意見을 收斂·分析하여 上部의 政策 決定·樹立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竝行한다.

현재 大檢察廳에는 20명의 檢察研究官이 活躍하고 있다.

6.2 일본 高等海難審判廳 調査官¹⁾

日本國土交通省令第5号인 海難審判廳組織規則 第4條에 의하면 高等海難審判廳에 調査官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 調査官은 命을 받아 海難事件의 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調査, 行政訴訟에 관련하여 필요한 事務, 기타 특별히 정한 사항에 관련된 事務를 擔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日本 高等海難審判廳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명의 調査官이 高等海難審判廳에 배치되어 있으며, 調査官이 되기 위한 특별한 資格要件은 없으나 高等海難審判廳長官이 審判官, 理事官²⁾, 事務官³⁾ 가운데서 任命하는데, 調査官의 所掌業務는 海難審判廳組織規則第4條에서 규정한대로 高等海難審判廳長官으로부터 命을 받아 所掌課와 협력하여 審判에 必要한 調査 또는 訴訟에 관한 事務를 수행하거나, 政策的 업무 등 特命事項으로 주어진 事務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다른 法令의 規定이나 별도의 內部規定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위한 제언

이상의 研究官 및 調査官制度에 관하여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海洋安全審判制度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審判研究官制度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海洋安全審判의 特殊性을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海洋安全審判院의 目的은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함으로써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審判에 있어서는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船舶乘務員의 人員數·資格·技能·勤勞條件 또는 服務에

1) 우리 심판제도의 조사관과는 다르며, 심판연구관에 해당

2) 우리 심판제도의 조사관

3) 우리 심판원에서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사무관·서기관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船體 또는 機關의 構造·材質·工作이나 또는 船舶의 艙裝이나 性能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水路圖誌·航路標識·船舶通信·氣象通報 또는 救難施設등의 航海 補助施設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港灣 또는 水路의 狀況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貨物의 特性 또는 積載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등에 관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해야 다.

또한 海洋安全審判은 行政審判의 일종으로 民·刑事에 비하여 節次가 간단하기는 하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罰을 隨伴하기 때문에 그 節次에 있어서 進歩된 裁判의 諸原則을 대부분 採擇하고 있으며, 또한, 海洋事故關聯者의 利益이 不當하게 制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審判官을 補佐하는 研究官으로서는 海洋安全審判實務에 대한 충분한 知識과 經驗을 쌓은 상당한 經歷을 가진 審判官 또는 調査官 經歷者가 가장 適任者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審判研究官의 本來的인 機能이 審判官을 效果的으로 補佐하는 것이라면, 우선 事件이 接受되어 각 審判官에게 配當되면 記錄을 檢討하여 原因糾明에 있어서의 爭點이 있으면 關聯法令에 대한 檢討 및 이에 관련된 審判事例, 國內外 法院에 의한 判例, 學說, 實務, 등에 관한 資料를 收集하고 整理·分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事例나 文獻 등 參考할 資料가 거의 없거나 不足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不可避하게 外國의 資料들을 參考해야 하므로 外國語의 知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原因糾明에 관한 結論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裁決書를 作成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裁決書의 作成作業은 海洋安全審判의 結果를 外部的으로 公表하는 것으로서 論理的으로 完璧한 裁決書를 作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審判實務에 상당기간 근무하여 裁決書作成에 익숙한 자를 研究官으로 選任한다면 審判官의 裁決書 作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研究官의 모습을 綜合하면, 審判院에서 審判實務에 상당기간 從事하여 충분한 實務經驗을 가지고 있고, 事件을 合理的으로 分析하여 그 結論을 論理整然하게 構成하여 裁決書 形態로 作成할 수 있는 理論的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原因糾明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資料를 收集할 수 있고, 外國語 解得能力이 있는, 公明正大한 審判의 確立에 一助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研究官의 數는 不足해서도 안되지만 무작정 그 數가 많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研究官 또는 調査官制度를 참고로 하고,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事件處理件數 등을 勘案하면, 각 審判官의 專屬研究官을 두기보다는 研究官補를 포함한 3명 정도의 共同研究官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研修教育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審判官으로 임명되어 審判業務에 從事해야 하는 現行의 審判官任用制度를 勘案하여 地方審判院 審判官 또

는 地方審判院 首席調查官 및 中央審判院 調查官 중에서 中海審 審判官 進出對象者를 研究官(4급, 1명)으로 보하여 中海審 審判官으로의 進出을 對備하게 하고, 地方審判院 審判官 任命待期者를 研究官補(5급, 2명)로 보하여 業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審判研究官에게 配當될 業務를 살펴보면, 本來的 業務로서 事件의 審理 및 原因糾明을 위한 資料調查 및 現場調查의 遂行, 裁決書 作成補助, 大法院에 提起된 訴에 대한 裁判業務의 遂行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의 業務로서 裁決된 事件에 대한 解說書 作成, 海洋事故事例集 受祿對象事件 選定 및 事例集發刊, 海洋事故의 統計 및 多發性 事件에 대한 深層의 分析을 통한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하기 위한 改善方案導出, 海洋安全審判制度의 發展을 위한 研究 등의 業務를 遂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審判研究官制度의 導入을 계기로 海洋事故의 原因, 態의 分析 등에 관한 情報提供의 機能向上을 圖謀함으로써 海洋安全審判 및 海洋事故防止에 관한 知識을 널리 알리는 등 海洋事故에 관한 情報의 利用을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논문>

賈在桓, “大法院 裁判研究官制度 - 日本의 最高裁調查官制度와 美國의 Law Clerk 制度와의 實務運營上依 比較”, 民事判例研究 第5輯
梁三承, “憲法研究官制度의 改善方案”, 憲法論叢 第3輯
法律新聞社, “司法補佐官制度에 관하여”, 法律新聞 第2288?, 1994년

<기타>

헌법재판소, “조직”, Internet 검색(<http://www.ccourt.go.kr/intro/i1.html>)
대검찰청, “검찰구조 및 업무”, Internet 검색 (<http://www.sppo.go.kr/intro/work.htm>)
OSEO.COM, “검찰청/전국검찰현황/대검찰청”, Internet 검색 (http://oseo.ezville.net/rd_b/sub2/map_1.html)
OSEO.COM, “법원/전국법원현황/대법원”, Internet 검색(http://oseo.ezville.net/rd_a/sub2/map_1.html)
日本全司法最高裁支部, “司法制度改革提言骨子案(第2次)”, Internet 검색(<http://www.zenshiho.net/070701.html>)
日本高等海難審判廳, “Organization and Jurisdiction”, Internet 검색 (<http://www.mlit.go.jp/maia/index.htm>)